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총 무 과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제출연월일: 2025. 5. . 번 호 제 출 자: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전문 인력 증원

나.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시적 전담 기구 신설에 따른 한시 정원 배치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
1) 정원 총계 : 변동 없음

2) 일반직 계: 1,848명 → 1,846명(△2명)

• 6급 이하 : 1,730명 → 1,731명(+1명)

전문경력관: 7명 → 4명(△3명)

3) 연구직 계 : 6명 → 8명(+2명)

• 연구사 : 6명 → 8명(+2명)

나. 한시 정원표(안 별표 4)

1) 아시아육상추진단(5급) : 삭제

2) 문화산단추진단(5급) : 신설(존속기한 : 2027. 6. 30.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제125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4조, 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정원(이하 "정원" 이라 한다)"을 "정원"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원"을 "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이 조례에 따라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 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3]

<u>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</u>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출장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890	1,890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846	1,846					
3급	1	1					
4급	13	9	1	1	1	1	
5급	97	47	3	6	5	11	25
6급이하 소계	1,731	1,731					
전문경력관 소계	4	4					
별정직 계	1	1					
5급 상당			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1					
연구직 계	8	8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8	8					
지도직 계	34	34					
지도관	3				3		
지도사	31	31					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4]

<u>한시 정원표</u>(제6조 관련)

기 관 별		정 원	존속기한	비고	
기선 열 	계	내 역	근무기안		
문화산단추진단	1	일반직 : 5급 1	2027.6.30.	문화산단추진단장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	제1조(목적)
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	
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	
라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	
<u>정원(이하"정원"이라 한다)</u> 에	<u>정원</u>
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
한다.	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미시에 두	제2조(정원의 총수)
는 <u>정원</u> 의 총수는 1,890명이며,	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"정
다음 각 호와 같다.	<u> 원"이라 한다)</u>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~ ⑥ 생략

□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 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 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⑤ 생략

제28조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 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~ ③ 생략

-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생략
-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- 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- 2. 삭제
 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-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 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 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 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
 - ③ ~ ⑤ 생략

ব	<u>.</u> 관 부 서	총 무 과
입	과 장	김 혜 진
안	팀 장	김 태 식
자	담 당 자	임 영 도 (480-6773)